

보도	2026.7.27.(월) 조간	배포	2026.7.24.(금)		
담당부서	소비자소통국 은행·금융투자민원팀	책임자	팀장	남영민	(02-3145-5762)
		담당자	선임	윤용진	(02-3145-5767)
			조사역	정세희	(02-3145-5765)

RIA 계좌에서 해외주식 매도시 **결제완료일**을 꼭 **확인**하세요.

- **매도 결제완료일**을 기준으로 **양도소득 공제율**이 결정됩니다 -

<주요 내용>

- 최근 금융소비자의 금융자산관리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투자상품의 범위도 점점 다변화되고 있습니다.
- 이에 다양한 금융투자상품 관련 민원 사례 중 ①**국내시장복귀계좌(RIA)**, ②**종합투자계좌(IMA)**, ③**ETF 특정금전신탁**에 관해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알려드립니다.
- 특히, **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세제혜택**이 있는 **RIA 계좌**는 최근 이용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**양도소득 공제 요건**을 정확히 안내하기 위해 소비자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.

RIA 누적 가입계좌 및 잔고 현황

구분	'26.3월말	'26.4월말	'26.5월말	'26.6월말
누적 가입계좌 (단위 : 좌)	83,035	188,418	276,609	313,594
총 잔고 (단위 : 억원)	4,140	13,389	25,839	26,560

< 금융투자상품 소비자 유의사항 >

- ① **(증권사 RIA 세제혜택①)** RIA 계좌에서 해외주식 매도시 매도 주문체결일이 아닌 **매도결제 완료일**을 기준으로 **양도소득 공제율**이 결정됩니다.
- ② **(증권사 RIA 세제혜택②)** 해외주식 매도 후 RIA 계좌에서 **국내 상장주식** 등에 투자하여 **1년간 보유**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③ **(종투사 IMA 수수료 등)** IMA는 통상 상품 **중도해지**가 불가능하며, 운용보수 이외에도 판매보수, 성과보수 등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.
- ④ **(은행 ETF 수수료 등)** 은행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ETF에 투자 시 신탁수수료 (0.03% ~ 2.0%)와 **중도해지수수료**(0.00% ~ 1.0%)를 추가로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.



소비자 유의사항

1

RIA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**매도 주문체결일**이 아닌 **매도 결제 완료일**을 기준으로 양도소득 공제율이 결정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.

<민원 사례>

◇ AA는 RIA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5.31까지 매도하면 양도소득을 100% 공제받을 수 있다는 ○○증권사 안내를 보고, ○○증권사의 RIA 계좌에서 5.29 해외주식을 매도하였으나, 매도결제 완료일이 6.2이라 양도소득을 80%만 공제받게 되었음

□ 개인투자자가 '25.12.23까지 취득한 해외주식을 RIA 계좌에 입고 하여 매도한 후 매도대금을 1년간 국내 주식 등에 투자하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
○ 매도한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 공제율은 '26.7월말까지 80%, '26.12월말까지 50%로 단계적으로 축소됩니다.

○ 이때 양도소득 공제율은 해외주식 매도주문이 체결된 날(T일)이 아니라 매도 결제가 완료된 날*을 기준으로 결정된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합니다.

* 해외주식은 주문체결일과 결제일 간에 시차(예 : T+1일, T+2일, T+3일 등)가 있으므로 양도소득 공제기준일인 결제 완료일을 거래 증권사에 반드시 확인할 필요

※ (예) 매도주문 체결일 7.27 ▷ 매도결제 완료일 7.29 : 양도소득 공제율 80%
매도주문 체결일 7.31 ▷ 매도결제 완료일 8.04 : 양도소득 공제율 50%

<참 고> 국내시장 복귀계좌 (RIA, Reshoring Investment Account)

□ 해외 주식을 국내 증권사의 해외 주식계좌에서 RIA 계좌로 이전하여 매도한 후 매도 대금을 1년간 국내 주식·펀드에 투자할 경우 해외주식 매도차익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(22%)를 감면해 주는 계좌 (조세특례제한법 §91의26)

【 RIA 계좌 이용 시 양도소득세 산정 단순 예시 】

- '25.12.23까지 보유하고 있던 해외주식을 RIA 계좌로 입고하여 ① '26.7.31까지 매도 결제 완료한 경우와 ② '26.8.3 ~ 12.31 중 매도 결제 완료한 경우로 해외주식 매매 차익은 동일하게 2,000만원이 발생하였다고 할 때, 양도소득세는 아래와 같이 산정

① '26.7.31까지 해외주식 매도 결제완료시 : 양도소득금액의 80% 공제 (양도소득세 33만원)
세액 = (양도소득금액 - 양도소득 기본공제 - RIA 공제액) × 22%
= (2,000만원 - 250만원 - 2,000만원 × 80%) × 22% = 33만원

② '26.12.31까지 해외주식 매도 결제완료시 : 양도소득금액의 50% 공제 (양도소득세 165만원)
세액 = (양도소득금액 - 양도소득 기본공제 - RIA 공제액) × 22%
= (2,000만원 - 250만원 - 2,000만원 × 50%) × 22% = 165만원



소비자 유의사항

2

해외주식 매도 후 매도대금을 RIA 계좌에서 **국내 상장주식 등에 투자**하여 **1년간 보유**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□ RIA 계좌는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해외주식 매도대금을 RIA 계좌에서 국내 주식 등에 1년 이상 투자하는 경우에만 세제 혜택이 부여됩니다.

○ RIA 계좌 내 투자 가능 자산이 국내 상장주식, 국내 주식형 펀드 (ETF 포함), 예탁금으로 한정된다는 사실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< RIA 계좌 내 투자 가능 자산 (조세특례제한법 §91의26③) >

구 분	상 세
① 국내 상장주식	유가증권, 코스닥,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식(리츠포함, DR제외)
② 국내 주식형 펀드	설정·설립 1개월이 경과된 펀드로서 집합투자재산의 80% 이상을 국내상장주식(①)에 투자하는 펀드 (단, 해외주식 및 국내 상장 해외ETF·ETN, 해외주식형 펀드 등이 편입되지 않을 것)

※ 참고로 '26년 중 RIA 계좌를 통한 해외주식 양도소득 세제혜택이 있는 경우 RIA 외 계좌에서 '26년 중 해외주식 등을 순매수하면 순매수 금액에 비례하여 양도소득 세제혜택이 감소 (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§93의12)

【 RIA 외 계좌 해외주식 등 순매수시 양도소득세 산정 단순 예시 】

구 분		'26.6월 ~ 7월 (공제율 80%)	'26.8월 ~ 12월 (공제율 50%)
RIA 계좌 해외주식 매매	매도결제금액(A)	1,000만원	1,000만원
	취득가액(B)	400만원	400만원
	양도소득금액(A-B)	600만원	600만원
RIA 외 계좌 해외주식 매매	매수결제금액	1,000만원	-
	매도결제금액	-	500만원

① RIA 공제액 : RIA 외 계좌의 해외주식 순매수로 인해 공제액이 조정(감소)

$$\begin{aligned}
 \text{RIA 공제액} &= \text{조정전 공제액} \times \left(1 - \frac{\text{RIA 외 해외주식 순매수금액}}{\text{RIA 내 해외주식 매도금액}}\right) \\
 &= (600\text{만원} \times 80\% + 600\text{만원} \times 50\%) \times \left(1 - \frac{1,000 \times 0.8 - 500 \times 0.5}{1,000 \times 0.8 + 1,000 \times 0.5}\right) = 450\text{만원}
 \end{aligned}$$

② 최종 양도소득세액 : 기본 공제, RIA 공제 후 산출

$$\begin{aligned}
 \text{세액} &= (\text{양도소득금액} - \text{양도소득 기본공제} - \text{RIA 공제액}) \times 22\% \\
 &= (1,200\text{만원} - 250\text{만원} - 450\text{만원}) \times 22\% = 110\text{만원}
 \end{aligned}$$



소비자 유의사항

3

종투사 IMA는 통상 상품 **중도해지**가 **불가능**하며, **운용보수** 외에도 **판매보수, 성과보수** 등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어 가입시 **상품설명서** 등을 **꼼꼼하게 확인**한 후 가입해야 합니다.

<민원 사례>

- ◇ BB는 ○○증권사 직원의 권유로 IMA 상품에 가입하였는데, 만기가 2년으로 길어 투자를 고민하다가 다음날 바로 ○○증권사에 IMA 가입취소를 요청하였음. 하지만 ○○증권사에서는 IMA 상품은 중도해지가 불가능하다면서 BB의 요청을 거절하였음

- IMA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(종투사)가 고객 예탁자금을 주식, 채권, 기업대출 등을 통해 운용하고 실적에 따라 수익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.
- 종투사는 폐쇄형·개방형, 단위형·추가형 등 IMA의 상품유형을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으나 폐쇄형 등 상품유형에 따라서는 중도해지가 불가능하므로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 - 또한, IMA는 운용보수 이외 판매보수, 사무관리보수*가 부과되며 상품설명서에 기재된 기준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성과보수가 추가로 부과되는 경우도 있어 투자에 유의해야 합니다.

* IMA 투자자산의 기준가 산출, 계좌관리, 회계처리 등 일반 사무관리 업무에 대한 보수

<참 고> 종합투자계좌 (IMA, Investment Management Account)

- 종합금융투자사업자(자기자본 8조원 이상)가 고객 예탁자금을 통합·운용하여 그 결과 발생한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계좌 (자본시장법 시행령 §77의6)

※ 만기 원금손실 발생시 종투사가 원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나 예금자보호법 미적용

IMA 투자자산 현황('26.6월말 기준, 단위:조원)

■ 수익증권 ■ 대출 ■ 채권 ■ MMF/MMT ■ CP 등



IMA 보수율 현황

구 분	보수율
판매보수(연)	(최저) 0.100% (최고) 0.500%
운용보수(연)	(최저) 0.085% (최고) 0.100%
사무관리보수(연)	(최저) 0.005% (최고) 0.085%
성과보수	기준수익률 초과액 × 30% ~ 50%
기준수익률	4.0% ~ 5.0%

※ 종투사 3개사*의 11개 IMA 상품기준

* 한국투자증권, 미래에셋증권, NH투자증권



소비자 유의사항

4

은행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ETF에 투자하게 되면 신탁수수료(0.03% ~ 2.0%)와 중도해지수수료(0.00% ~ 1.0%)를 추가로 부담하게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.

<민원 사례>

◇ CC는 ■■은행에서 특정금전신탁으로 ETF를 가입하였는데, ETF 거래수수료 외에 은행의 경우 추가로 신탁수수료가 있다는 사실을 ■■은행 영업점 직원이 가입 당시 알려주지 않았음

□ 은행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ETF에 투자하면 거래수수료, 세금* 외에 신탁수수료 및 중도해지수수료 등이 부과되기 때문에 ETF 실제 수익률은 당초 목표수익률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.

* 특정금전신탁으로 ETF에 투자하더라도 직접 매매할 때와 동일한 세금이 발생

○ 특정금전신탁 ETF의 경우, 상품 가입 시 통상 1.0% 수준의 높은 선취 신탁수수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.

- 신탁 중도해지 시 선취 신탁수수료 중 신탁기간 미경과분을 환급 해주고 있으나, 환급액을 한도로 중도해지 수수료(통상 1.0%)가 부과 되므로 단기 투자시에도 높은 수수료가 부과됨에 유의해야 합니다.

<특정금전신탁 보수율*(5개 시중은행 기준)>

구 분	신탁수수료		중도해지수수료**
	선취형	후취형	
수수료율	0.03% ~ 1.0%	0.03% ~ 2.0%	0.0% ~ 1.0%

* 은행은 홈페이지를 통해 상품성 신탁 보수율을 공시(금투업규정 §4-82④)

** 선취형 상품에 한하며 선취 신탁수수료 환급액(기간 미경과분)을 한도로 부과

◇ (참고) ETF 투자시 발생하는 세금

구분	과세대상 소득	
	분배금(배당금)	매매차익
국내 주식형 ETF	(배당소득세) 분배금 × 15.4%	-
주식형 외* 국내상장 ETF * (예) 해외주식·채권 ETF 해외원자재 ETF 국내채권 ETF 등	(배당소득세) Min[분배금, 과세표준가격* 증가분] × 15.4%	(배당소득세) Min[매매차익, 과세표준가격* 증가분] × 15.4%

*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 기준가격 (ETF 자산 중 과세 대상 자산만 평가)